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-821호

「주택법」 제27조 및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65조에
따른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2016년 12월 6일

국토교통부장관

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일부개정안

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주택법」 제21조”를 “「주택법」 제37조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제16조제1항”을 “제15조제1항”으로, “법 제42조제2항제2호”를
“법 제66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29조”를 “법 제49조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법 제29조제1항”을 “법 제49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별지서식 중 “「주택법」 제16조”를 “「주택법」 제15조”로, 같은 서식
중 “법 제42조제2항”을 “법 제66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「주택 법」 제21조 및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65조에 따 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주택 법」 제37조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3조(적용대상) 「주택법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6조제1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거나 법 제42조제 2항제2호에 따라 500세대 이상 의 리모델링을 하는 주택에 대 하여 적용한다.	제3조(적용대상) ----- ----- 제15조제1항-- ----- ----- 법 제66조 제1항----- ----- -----.
제7조(관리자 및 입주자 사용설명 서 작성·배포) 사업주체는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 관리자 및 입주자가 지켜야 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공동주택 관리 및 입주자 사용 설명서를 작성·배포하여야 한 다.	제7조(관리자 및 입주자 사용설명 서 작성·배포) ----- 법 제49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5. (생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제9조(자체평가서의 완료 확인)	제9조(자체평가서의 완료 확인)

① (생략)

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감리자가 제출한 "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자체평가 이행확인서"를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 신청 시 사업승인권자에게 사용검사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☐ 종합 확인서 :

본 자체평가서는 「주택법」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 신청 시 제출한 설계도서를 기초로 「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」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숙지하고 위 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성·제출되었으며, 작성된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행정제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법 제49조제1항 -----

-----.

[별지 제1호 서식]

☐ 종합 확인서 :

본 자체평가서는 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리모델링 신청 시 제출한 설계도서를 기초로 「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」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숙지하고 위 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성·제출되었으며, 작성된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행정제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작성자(사업주체):

(인)

작성자(사업주체):

(인)